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07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3
2.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6
3.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 등	8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1.
3. 회부연월일 : 2026. 5. 12.

II. 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택시 등 기지 이전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그에 따른 주둔의 지속으로 평택시 등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생활환경 변화, 기반시설 부족 등 일상적 불편을 계속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 구조로 운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 보조율에 관한 핵심사항이 허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 편익사업과 생활 SOC 확충사업이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지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증가한 교통수요와 생활권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교통개선

대책을 주민 생활편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 근거 명문화(안 제15조의2).

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보조율 규정 정비(안 제29조).

다. 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해진 유효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유효기간 폐지(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 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①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의 신설·확장 및 연결도로 개선</u> 2. <u>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u> 3. <u>통학·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u>

	<u>교통안전시설 확충</u> <u>4.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환경 개선사업</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	---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2004년 1월부터 평택기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며 본격화되었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지진입도로·주변도로 건설 등도 함께 이루어졌음.

2017년 미8군사령부 청사 개관 및 2018년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으로 인한 평택기지의 본격적인 운영과 평택기지 주변부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 등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효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관계 부처 입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재정적 지원’ 범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포함된다면 원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추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 교통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교통개선대책 우선 추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지자체 예산지원 의무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평택기지 주변의 교통을 개선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방식 및 그 재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현행법 제29조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인상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행령의 기준보조율과 가산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평택시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u>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u>	제2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 ----- ----- ----- <u>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u> ----- ----- ----「 <u>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u>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신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 법 제29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가산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의 국고보조금 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상의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가산율을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이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보조율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것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국가 재정 상황과 연계한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 지원체계를 변경할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 등

개정안은 유효기간과 적용특례를 정한 법률 제7271호의 부칙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 칙 ① (생략)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 칙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동 특별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법률 제7271호)되었음.

이후에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기지 이전사업 등의 추진경과 등을 재

검토하며 유효기간을 4년 단위로 연장해 왔고, 2026년 6월 9일 법률 제21771호 일부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한시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이 한시법 체계로 운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지원체계를 상시화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국가 재정운용 측면에서 유효기간 삭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주민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기한 연장을 4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시법 체계의 유지 여부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